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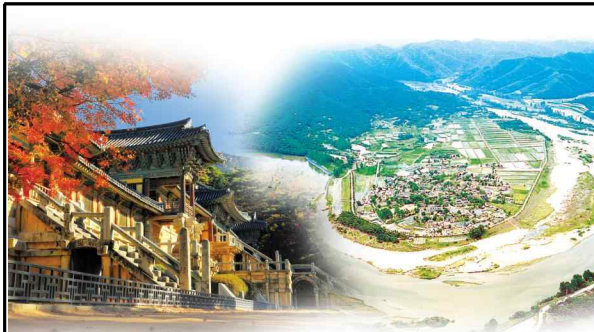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TEL. (054)880-2921

FAX. (054)880-2929

『천혜의 자연! 천년의 문화! 세계로 열린 관광경북!』



[경주 불국사]

[안동 하회마을]

- ◆ 장엄한 백두대간, 800리 정정동해!
- ◆ 천년의 신라문화, 한국문화의 원형寶庫!
- ◆ 유네스코가 인정한 가장 한국다운 한국,
“새바람, 행복경북” 으로 놀러오세요.

(<http://tour.gb.go.kr>)

시설공사 입찰공고



경 상 북 도
<http://www.gb.go.kr>

☞ 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경상북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시설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지경천(지경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신설

다. 위 치 :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회리 ~ 부경리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20일간

※ 720일 = 준비기간(40일) + 비작업일수(447일) + 작업일수(203일) + 정리기간(30일)

마. 과업내용 : 하천공사 L=3.9km

바. 공 사 비

(단위 : 원)

추 정 금 액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8,579,500,000	6,501,500,000	5,910,454,546	591,045,454	2,078,000,000	38,000,000

※ 2026년 예산액은 4,700백만원 정도입니다.(예산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사. 본 공사의 원가계산은 아래 기준으로 산정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 노임

2)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 및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아. 본 공사는 현장여건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현장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관계로 사업부서의 요청에 의해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계약, 제한(지역)입찰,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장기계속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지역업체**여야 합니다.
-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증에 등재된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 입찰참가자 자격유효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4. 입찰서 제출

- 가. 제출기간 : 2026. 9. 17.(목) 09:00 ~ 2026. 10. 20.(화) 10:00
- 나. 개찰일시 : 2026. 10. 20.(수) 11:00
-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5. 현장설명

-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나. 열람 장소 및 기간 :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수자원관리과(☎054-880-4072)**
개찰일 전일 18:00까지

6. 공동계약 : 해당없음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 처리요령’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별도로 접수받지는 않으며,
- 다. 입찰보증금의 우리 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서 제출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됨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고객지원센터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나.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1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pm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토목공사업” 100%**입니다.

2) 직접시공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붙임4]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참고

종합공사		공종별 직접노무비
만점 비율(20%) 변경		
A : 20% 이상	6.0	2,033,282,461원
B : 15% 이상 ~ 20% 미만	5.0	
C : 10% 이상 ~ 15% 미만	4.0	
D : 5% 이상 ~ 10% 미만	3.0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무비(직접+간접)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난이도계수
37.40	3.58	5.10	7.69	E등급(1.00)

-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본 공사 순공사원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은 5,606,121,419원임

10. 입찰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 : 금428,677,219원

(단위:원)

합 계(A)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428,677,219	73,096,504	96,580,916	9,604,880	46,765,49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02,730,636	33,336,020	66,562,767	

-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대상 공사입니다.
-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합니다.
-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안내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법령(전기, 정보통신, 전문소방 등)에 따릅니다.

-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할 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 2) 다만,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하도급자와 합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3)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할 경우,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4)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협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협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협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협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인출 제한됩니다.
-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8. 기타사항

- 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나.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에 따라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사용하고 대금 지급 방법은 직불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다.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라. 기타문의사항
 - 전자입찰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문의 : 회계관리과 계약조달팀(☎054-880-2921)
 - 설계서 열람, 사업내용(내역서) 문의 : 수자원관리과(☎054-880-4072)

2026. 9. 16.

경상북도 재무관

공사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처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계약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계약담당자)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4. 대가지급 및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확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하자보수보증금 기성 공사대금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및 준공시 기성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다.

6. 건설기계대여계약의 통지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기성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및 34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지킴이」 이용 협약서

당 사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장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 사는 귀 기관과의 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이
아
지

주소:

업체명:

대표자: (인)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 목적

- 직접시공 평가 시행(‘25.1.)을 앞두고 원활한 평가와 제도 안착을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안내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 (입찰공고) 공사의 공종별 직접노무비 명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예시와 같이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하고 평가 방식 명시

만점 비율(20%) 변경(예시 1)	
A : 20% 이상	6.0
B : 10% 이상 ~ 20% 미만	4.0
C : 10% 미만	2.0

만점 비율(20%) 변경(예시 2)	
A : 20% 이상	6.0
B : 15% 이상 ~ 20% 미만	5.0
C : 10% 이상 ~ 15% 미만	4.0
D : 5% 이상 ~ 10% 미만	3.0

-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가격 총액 중 직접시공 공종별 노무비 금액, 비율을 명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제출 받아 평가

- 직접시공·하도급·미확정 금액의 합계액과 입찰총액 일치 확인
- 입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각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중 직접시공할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낙찰 통과점수 미달시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적격심사 제3절, 중평제 제5절)

- (계약이행) 계약상대자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라 제출한 노무비의 직접시공 대상 노무비 여부 확인

* 월별 해당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확인 및 임금 지급 여부 확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법 변경 등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허용

- (준공) 발주기관에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시공 실시 여부 확인

□ 적용기간

- '25.1.1.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참고 1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계획 평가 관련 규정

세부심사항목	등 급	평 점	비고
1. 단일공종공사 등		12.0	
2. 종합공사	계	12.0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A: 30% 이상 B: 20% 이상 ~ 30% 미만 C: 10% 이상 ~ 20% 미만 D: 10% 미만	6.0 4.0 2.0 0.0	
②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C)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A: 82% 이상 B: 80% 이상 ~ 82% 미만 C: 77% 이상 ~ 80% 미만 D: 77% 미만	5.0 4.0 3.0 2.0	
③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A: 사용 B: 미사용	1.0 0.0	
④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 불이행 B: 부당 변경	-3.0 -2.0	감점
⑤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A: 20% 이상 B: 10% 이상	+1.0 +0.5	가점

주1)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하고,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①, ②, ③평가는 세부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②, ③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2) 심사항목 ① 평가방법

가) 평가등급은 입찰금액 기준 총 직접노무비 대비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 비율(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②/①×100))로 산정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는 구성원(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부계약자 포함) 각자가 직접시공하는 공종의 직접노무비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 제고 필요성, 건설업계의 직접시공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점 등급을 10%p 범위(만점등급 최소 20% 이상, 최대 40% 이상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참고 2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서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1호 서식]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단위 : 천원)

공사명			
입찰가격 총액 (A=㉠+㉡+㉢)	A	천 원	입찰가격 중 직접노무비 총액 ① 천 원
직접시공할 공사(㉠)	하도급할 공사(㉡)		직접시공 또는 하도급할 공사(㉢)
천 원	천 원		천 원

직접시공할 공사(㉠)			
공사종류	규모(물량)	전체 금액	직접노무비 금액
		천 원	천 원
		천 원	천 원
		천 원	천 원
합계		① 천 원	② 천 원
직접시공 비율(②/①)		%	

하도급할 공사(㉡)					
공사 종류	규모 (물량)	조사금액	입찰금액	하수급예정자와 계 약 할 금 액 (지급자재금액)	하수급예정자 지역업체 여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합계		B	C=㉡	D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 하수급금액비율(D/C) : %					
○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사 용 ()	미사용 ()

위와 같이 ()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계획서에서 정한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도급 업체 선정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 정지 중이 아니고,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본 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약속하는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 기재)

귀하